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2410.4



이 상품은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만기시에 자동갱신되며,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까지 보장) 매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및 적용기초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1-1. 특약 이름[반려묘수술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확대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 내에서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반려묘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 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제4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에 추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반려묘가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 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추가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유의사항>

[수술]

동물병원의 수의사 지격을 가진 지(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 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이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 (비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 검사)
- ④ 회사가 지급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발생한 의료비에서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보험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 서 정한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에시안내>

[반려묘 수술비(치과 및 구강질 환포함) 확대보장 계산]

- · 보험가입금액 : 반려묘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 10만원, 반려묘 수술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
 - 확대보장 200만원, 보상비율 : 70%, 자기부담금 : 2만원
- 예시1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310만원
-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보험금 : 1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310만원 10만원) × 7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 200만원
- · 011/12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290만원
-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보험금 : 1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290만원 10만원) × 7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 196만원
- ⑤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하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하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6.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7.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및 질병
- 8.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2.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및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묘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2.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 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3.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4.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5. 손톱의 절제(며느리발톱의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손톱깎기 등의 처치비용
- 6. 미용으로 인한 비용
- 7.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가 아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 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 부외품 등)
- 9. 목욕 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 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 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0.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합니다),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 11.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 후에 소요된 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운송비 포함)
- 12.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문제행동 교정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3.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의 발생일 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 와 동종의 비용
- 15.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6.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Ī		<용어풀이>
	배꼽하니아	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F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
	고양이	고양이 허피스바이러스 1형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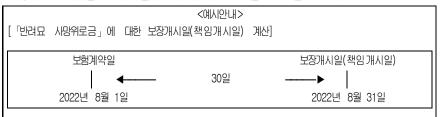
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 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 백혈병바이러스에 감염에 의한 조혈기 질환
잔존유치	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남아있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
잠복고환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증상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특약 이름[반려묘사망위로금]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지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6.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

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묘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